

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3. 5. 11 선고 2022나518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

담당변호사 석윤수

피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B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

변 론 종 결 2023. 4. 13.

판 결 선 고 2023. 5. 11.

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. 10. 28. 선고 2021가합52433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13.

체결된 매매계약을 128,209,1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

128,209,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피고 B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1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1,997,8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161,997,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 1 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,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.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- 제1심판결 제5면 5행의 “합계 561,846,454원”을 “합계 561,846,454원(= F조합 195,679,054원 + 중소기업은행 80,000,000원 + 원고 286,167,400원)”으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제8면 4행 및 10~11행의 각 “원 미만 버림”을 각 “원 미만 반올림”으로 고친다.

3. 추가 판단

- 피고들은, 제1심판결 제6면 1~15행의 ‘나) 판단’ 부분은 주로 갑 제11호증의 1(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의견서)에 터 잡아 피고들의 주장 및 증거를 배척한 것인데, 위 문서는 피고 B이 원고 측의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아들 G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고, 그 내용도 위 G이 피고 B으로부터

들은 사정들과 자신의 추측을 섞어서 기재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○ 피고들은,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(을 제1호증의 1)에는 매매대금이 160,000,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이는 C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,000,000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은 180,000,000원이었고, 이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당시 시가 216,000,000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80,000,000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진술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, 임대차목적물의 범위,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,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,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실제 매매대금이 180,000,0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시가 216,000,000원보다 17%가량 저렴한 금액인바, 이를 두고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에 매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.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경표, 판사 신종오, 판사 강성훈